##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민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59 발의연월일: 2025. 4. 28.

발 의 자:최민희·정동영·이정헌

김남근 • 이연희 • 이재정

권향엽 · 황정아 · 양부남

조인철 · 장종태 · 황명선

김 윤・김 현 의원

(14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의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·결정하도록 함.

그런데 공직자의 재산등록·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 을 목적으로 하므로,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대상자, 조치내용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결정을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공개 의무를

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재산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2제7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##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에 따른 통보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4조의5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하여야 한다"를 "하고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14조의14의 제목 중 "사실의"를 "사실 등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등록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자가 제14조의5제7항에 따른 심사에서 직무관련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2(심사결과의 처리) ① ~	제8조의2(심사결과의 처리) ① ~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
	에 따른 조치 및 제6항에 따른
	통보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를
	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제14조의5(주식백지신탁 심사위	제14조의5(주식백지신탁 심사위
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)	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)
① ~ ⑩ (생 략)	① ~ ⑩ (현행과 같음)
①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	①
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공개대	
상자등이 제6항에 따른 심사청	
구 또는 제14조의4제1항 각 호	
의 행위를 기한 내에 하지 못	
하거나 제9항에 따른 요구 또	
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	
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	
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	
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	
하여야 하며, 통보를 받은 공직	
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	
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의 조치를 <u>하여야 한</u>	<u>하고 이를 관보</u>

<u>다</u>.

1. ~ 3. (생략)

① ~ ⑭ (생 략)

제14조의14(주식의 매각 또는 신 제14조의14(주식의 매각 또는 신 탁 사실의 공개) ① (생 략)

<신 설>

② · ③ (생 략)

또는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① ~ ⑭ (현행과 같음)

탁 사실 등의 공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등록기관의 장은 공개대상 자가 제14조의5제7항에 따른 심사에서 직무관련성을 인정받 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개 하여야 한다.

③ • ④ (현행 제2항 및 제3 항과 같음)